본 계약서는 열람, 계약체결, 법원제출 등의 용도 외 무단복제, 제3자에 대한 유출

및 공개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 하여야 함

**가맹계약서**

 **점**



**[(주)현대씨에스엔]**

**목차**

**제 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용어의 정의)**

**제3조 (가맹점의 표시 및 계약당사자)**

**제4조 (영업표지)**

**제5조 (가맹점운영권의 부여)**

**제6조 (영업지역)**

**제7조 (계약기간과 갱신)**

**제 2장 개점준비**

**제8조 (가맹비와 예치)**

**제9조 (개점 전 교육·훈련)**

**제10조 (인테리어 설비)**

**제11조 (장비의 구입 및 오픈 홍보·판촉)**

**제12조 (인 ∙ 허가 및 초기 투자금의 납입)**

**제13조 (초도 물품의 주문)**

**제 14조 (개점 점검 및 승인)**

**제3장 개점 이후 “갑” 과 “을”의 권리와 의무**

**제15조 (전산관리비 및 공급품대금의 납입)**

**제16조 (개점 이후 교육 및 훈련)**

**제17조 (비밀유지 의무)**

**제18조 (경업금지 의무)**

**제19조 (경영지도)**

**제20조 (감독 및 시정 요구권 등)**

**제21조 (영업의 표준화 및 취급품목, 판매가격)**

**제22조 (공급품 등의 조달과 관리 및 결제)**

**제23조 (자점매입)**

**제24조 (공급품의 하자∙검사와 반품)**

**제25조 (가맹점운영권의 제한)**

**제26조 (복장 및 영업시간)**

**제27조 (시설 및 기기의 유지 관리)**

**제28조 (회계자료 및 통지의무)**

**제29조 (광고)**

**제30조 (판촉)**

**제4장 계약의 해지 및 종료**

**제31조 (계약의 해지)**

**제32조 (계약의 종료와 그 조치)**

**제33조 (위약벌 등)**

**제34조 (중도 계약 해지에 따른 금전 반환 조건)**

**제35조 (영업의 양도 등)**

**제36조 (영업의 승계)**

**제5장 기타**

**제37조 (지연이자)**

**제38조 (통지방법)**

**제39조 (동의와 권리행사)**

**제40조 (계약의 효력 및 변경)**

**제41조 (분쟁해결 및 관할법원)**

**제42조 (사전 정보제공 및 설명의무)**

**제43조 (특약사항)**

가맹본부 (주)현대씨에스엔(이하 “갑”이라 한다)과 가맹점사업자(이하 “을”이라 한다)는 본 가맹계약서에 열거된 각 조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베스트올 가맹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전문-**

1. 이 계약서는 가맹사업거래의 관계법령을 기초로 “갑”과 “을”간의 공정한 가맹계약 체결을 위해 그 계약조건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갑”의 상호, 상표, -공급품 일체 및 그 가맹점 조직은 “갑”의 상당한 시간과 비용 및 기술, 용역을 투입하여 개발한 것이다. 이의 특징은 매장내의 특이한 장식과 색채, 비품, 복장 등에 있고, “갑”에 대한 표시는 상호·상표 등으로 나타낸다.
3. “갑”은 『베스트올』이라는 상호·상표 등으로 표시되는 공급품과 서비스의 판매를 위한 경영 및 영업활동의 방법과 교육, 지원 등에 관한 표준적이고, 독특하며, 통일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4. “갑”은 『베스트올』이라는 상호·상표 등과 관련된 모든 권리·이익 및 이와 관련된 파생적 상표나 노하우 등에 대하여 독점적·배타적 권리를 가진다.
5. “갑”은 가맹사업의 통일성 및 “갑”의 명성유지를 위하여 “을”의 자의적인 제품 개발·판매·사용을 금지하며 “을”에게 적절한 경영지도와 통제를 할 수 있고 “을”은 이를 인정하고 수용하여야 한다.
6. “갑”과 “을”은 각자 독립된 사업체이며 “을”은 “갑”과 체결한 약정상에 명시적으로 부여 받은 권한 범위 내에서만 권리를 가진다.
7. “을”은 “갑”의 가맹사업 의 가맹점으로 참여함으로써 “갑”의 경영이념에 적극 동참하고 “갑”의 경영방침과 영업지도를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갑”과 “을”의 경영목표 달성과 상호이익 증진을 통한 지속적인 제휴관계를 유지하기로 한다.
8. **총칙**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을”이 “갑”의 베스트올 가맹사업(이하 “가맹사업”이라 한다)에 가맹점으로 참여하여 베스트올 가맹점시스템에 의한 가맹사업을 영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며, 상호신뢰와 협조로 이를 성실히 수행하고 공동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가맹계약”이라 함은 “갑”이 “을”로 하여금 자신의 상표·서비스표·상호·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이하 “영업표지”라 한다)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 기준과 기타 영업방식에 의하여 영업할 것을 허락하고 아울러 “을”의 영업과 관련하여 일정한 통제 및 지원을 할 것을 약정하며, “을”은 영업표지의 사용허가와 영업상 지원 및 교육에 대한 대가로 가맹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1. “가맹본부”라 함은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을”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자 “갑”을 말한다.
2. “가맹점사업자”라 함은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갑”으로부터 가맹점운영권을 부여 받은 자 “을”을 말한다.
3. “협력업체”라 함은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인테리어 및 장비 등에 대하여 “갑”이 지정 또는 알선하여 “갑”을 대행해 “을”과 거래하는 업체를 말한다.
4. “공급품”이라 함은 “갑”이 베스트올 편의점 사업의 목적상 제조, 구입 또는 알선하여 “을”에게 공급되는 일체의 품목을 말한다.
5. “제품”이라 함은 “을”의 가맹점에서 판매되는 모든 품목을 말한다.
6. “인테리어”라 함은 가맹점의 내∙외부의 설비시설을 말하며 이는 “갑”이 제공하는 인테리어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7. “장비”라 함은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워크인쿨러, 런치케이스, 냉∙난방기, POS시스템, 간판 ∙실사물, 각종진열대, 감시카메라, 기성설비 등을 말한다.
8. “집기비품”라 함은 가맹점 운영에 소요되는 기타 비품류를 말한다.
9. “판촉물”이라 함은 판매촉진을 위해 소요되는 포스터, 전단지, 스티커, 사은품 등을 말한다
10. “판촉시설물”이라 함은 판매촉진을 위해 제작되는 시설물을 말한다.
11. “필수품목”이라 함은 “갑”이 지정한 품질기준이 있는 품목을 말한다.
12. “지정거래처품목”이라 함은 가맹사업의 통일성 유지를 위하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밝힌 “갑” 또는 “갑”이 지정한 구입처로부터 공급 받아야 하는 품목을 말한다.
13. “권장거래처품목”이라 함은 “갑”이 정한 기준에 맞추어 “을”이 직접 또는 “갑”이 지정한 구입처 중 선택하여 구입 할 수 있는 품목을 말한다. 이 경우 반드시 “갑”의 사전 품질검사 승인을 얻어야 한다
14. “영업비밀”이라 함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다음 각목의 정보를 말하며, 이는 매뉴얼 및 기타 문서, 도면, 구두 등으로 제공된다.
15. 가맹점의 구조, 내∙외장, 가맹점 내 배열, 가맹점의 설비와 관련된 일절의 사항
16. 각종 제품 판매 노하우
17. 각종 물품 등의 구입처
18. 접객방법, 판매가격, 기타 판매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
19. “경쟁 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갑”의 영업과 동종 또는 유사한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가맹점의 표시 및 계약당사자)**

1. “본 계약”에 의하여 “을”이 개설하게 되는 가맹점의 표시는 별첨1과 같다.
2. “본 계약”상의 계약자와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 및 임차계약서상의 계약자(자가점포인 경우 소유주)는 동일인이어야 한다. 만약 위 세 계약당사자 중 어느 하나라도 상이한 경우에는 그 다른 계약자는 연대보증인으로서 본 계약서에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3. “을”은 별첨1 가맹점의 표시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의 내용 및 그 사유를 기재한 문서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신청하여 “갑”의 서면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조 (영업표지)**

1. “갑”은 영업표지에 대한 배타적 독점권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절차를 이행한다.
2. “갑”은 “을”에게 다음의 BI를 사용하여 베스트올 가맹점을 운영할 것을 허락하며 “을”은 이를 사용하기로 한다.

|  |  |
| --- | --- |
| **명칭** | **이미지(BI)** |
| 한글: 베스트올영문: BESTALL | BestAll_logo_1 |

1. 제2항의 BI뿐 아니라 가맹사업에 관한 모든 지식재산권은 “갑”의 독점적인 권리이고 “을”은 다음 각호의 범위에서만 이를 사용할 수 있다.
2. 별표1에 표기된 가맹점소재지(이하 “가맹점소재지”라 한다)에서 “갑”이 보유 또는 사용허락한 영업표지를 “갑”이 지정한 위치의 간판 및 인테리어 시설물(“갑”이 최초 제시한 인테리어 도면에 의한 시설물)에 이용하여 가맹점을 운영할 권리
3. 기타 “갑”의 서면동의를 얻어 가맹점소재지에서 “갑”의 영업표지를 판촉 홍보활동 등에 사용할 권리
4. “을”은 “갑”이 공급하는 공급품 및 기타 가맹점 설비 등에 부착된 “갑”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영업표지를 훼손 또는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범위 외에 사용하거나 “갑”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고, 이를 최선의 상태로 유지하도록 관리할 의무가 있다. “을”은 자체 사업자 및 법인명의 등 법적인 명칭과 기타 통용되는 명칭에 “갑”이 현재 사용 중 이거나 신청 중인 명칭, 또는 변경된 명칭 등을 사용하지 못한다. 이때 “갑”이 “을”로부터 수령한 가맹금 중 이행 의무가 남아 있는 부분이 있을 경우 “을”은 계약 해지와 함께 “갑”의 귀책 정도에 따라 가맹금 중 미 이행 부분 중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청구 할 수 있다.
5. 제2항의 영업표지에 대하여 “갑” 및 가맹점사업자 모두의 공동의 이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갑”은 영업표지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대하여 협조 하여야 한다.
6. “갑”이 사용을 허락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이를 “을”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갑”은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을”은 변경된 영업표지를 사용하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다만, “갑”이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할 경우에는 “을”은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7. “을”은 제5항 및 제6항에 의거 영업표지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되기 전의 영업표지는 사용할 수 없고, 이러한 영업표지가 부착된 상품과 기타 점포설비 등은 “갑”의 요청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제5조 (가맹점운영권의 부여)**

1. “갑”은 “을”에게 제6조의 영업지역 내에서 베스트올 가맹점을 운영하도록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한다. 다만, 그 범위에 관해서는 개별조항에서 구체적으로 정한다.
2. “갑”이 보유한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베스트올 가맹점을 운영할 수 있는 권리
3. “갑”으로부터 베스트올 가맹점 운영을 위한 공급품을 공급 받을 수 있는 권리.
4. 가맹점을 효율적으로 운영 할 수 있도록 “을” 또는 “을”의 직원이 “갑”으로 부터 지도·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
5. “갑”과 “을”의 공동 이익 증진을 위한 “갑”이 주도하는 공동 광고, 판촉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6. 기타 “갑”이 보유하고 있는 권리로서 “을”과 협의하여 정한 사항.
7. 전항의 가맹점운영권은 “을”의 “본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제한 될 수 있으며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부터 소멸된다.

**제6조 (영업지역)**

1. “갑”은 영업지역을 구분하고 “을”은 자신의 책임하에 점포의 입지를 선정한다.
2. 전항의 입지선정과 관련하여 “갑”은 해당지역의 행정구역상의 구분, 시장의 특성, 주요한 근린시설, 업종특성에 따른 매출성향 등을 고려하여 “을”에게 조언을 할 수 있다.
3. “을”의 입지 선정과 관련하여 “갑”이 조언한 경우라도 최종 의사 결정은 “을”이 하며, 점포의 매출액 및 수익액은 “을”의 관리능력이나 여건의 변화에 의하여 변동될 수 있음과 점포 오픈과 관련된 인허가 사항 및 상가규약 등의 확인은 “을”의 책임임을 확약한다.
4. “을”이 선택한 영업지역에 대하여 가맹점 중앙을 기준으로 반경 50m 범위로 설정하거나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도로 표시하여 첨부(별첨2)하고, 계약기간 중 그 범위 내에서 동일 업종의 가맹점 및 직영점을 설치하지 않는다
5. 동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갑”의 베스트올과 사업형태가 동일한 동일업종 외의 다른 브랜드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갑”은 “을”의 영업노력이 손상되지 않도록 배려한다.

**제7조 (계약기간과 갱신)**

1. “본 계약”은 계약체결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2년간 유효하며, 갱신시에도 동일한 기간으로 계약이 연장됩니다.
2. “갑”은 “을”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상의 계약 갱신 요청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경우 그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3. “을”이 “갑” 또는 “협력업체”에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채무의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4. “을”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5. 가맹사업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갑”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을”이 지키지 아니한 경우
6. 가맹점의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에 관한 사항
7. 판매하는 제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의 준수에 관한 사항
8. “갑”의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사항
9. “갑”이 “을”에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ㆍ훈련의 준수에 관한 사항
10. “갑”이 제2항에 따른 갱신 요구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통지한다.
11. “갑”이 제3항의 거절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나 가맹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의 통지를 서면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 만료 전의 “본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을”가 계약이 만료되는 날부터 60일 전까지 이의를 제기하거나 “갑” 또는 “을”에게 천재지변이나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2장 개점준비**

**제8조 (가맹비와 예치)**

1. “을”은 “갑”에게 최초 가맹계약 당시 정보공개서의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대가로 가맹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2. 전항의 가맹비는 가맹점 개점을 위한 소멸성 비용으로서 가맹점 개점 이전 해약 시에는 전항의 가맹비 내역 중 이행이 착수된 채무에 해당하는 비용을 제외하고 반환하며, 가맹점 개점 이후에는 반환되지 않는다.
3. “을”은 예치가맹금을 “갑”이 지정하는 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갑”이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5조의2에 따라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 하는 경우 “을”은 계약체결 즉시 “갑”의 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갑”은 가맹점 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 관련 보험증서를 “을”에게 제공하기로 한다.

**제9조 (개점 전 교육·훈련)**

1. “을”은 베스트올 가맹점으로서 효율적인 가맹점운영을 위하여 “갑”으로부터 직영점 교육과 현장교육(POS 사용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기존 편의점 운영주의 경우에는 직역점 교육이 면제 될 수 있다.
2. 개점 전 교육·훈련 종료 시 교육대상자들의 교육수료 결과를 판단하기 위해서 개점에 필요한 최소한의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추가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때 “을”에게 추가비용이 청구될 수 있다.

**제10조 (인테리어 설비)**

1. “을”은 가맹점 개점일 전까지 가맹사업 전체의 통일성과 독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갑”이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 “갑”의 실사와 검토를 통하여 실내∙외 인테리어 설비 (이하 “인테리어 설비”라 한다)를 “을”의 비용으로 완료 하여야 한다.
2. “을”은 “갑”이 정한 사양에 따라 직접 또는 “갑” 및 “협력업체”를 통하여 가맹점의 설비를 할 수 있다.
3. “을”은 “협력업체”에 가맹점의 설비를 의뢰하는 경우 별도의 가맹점 설비 의뢰서를 작성한다.
4. “을”이 직접 가맹점의 설비를 하는 경우, “갑”은 “을”에게 설계도면 및 시방서, 디자인을 제공할 수 있으며, 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직원을 파견하여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관리한다. 이 경우 “갑”은 시설에 대한 책임은 일체 지지 아니한다.
5. 전항과 관련하여 “을”은 “갑”의 설계 도면 및 시방서, 디자인 제공과 검수 등에 대한 대가로 총 인테리어 시공비의 10%(VAT별도)에 해당하는 금원을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6. 전항을 “을”이 이행하지 않거나 합의에 도달하지 않을 경우 “갑”은 제4항의 의무가 없으며 “갑”은 이를 이유로 계약을 진행하지 않을 수 있다.

**제11조 (장비의 구입 및 오픈 홍보·판촉)**

1. “을”은 가맹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장비의 구입 설치 하여야 한다. 다만, 장비의 구입은 정보공개서 상의 장비의 요구/권유 기준에 따라 “갑” 또는 “협력업체”에 의뢰하거나 기준 및 사양에 맞추어 직접 구입할 수 있다.
2. “을”은 가맹점 오픈 시 효율적인 가맹점의 홍보를 위하여 홍보∙판촉물을 제작 및 홍보행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다만, “을”에게 효율적인 방법이 있는 경우 “을”은 “갑”에게 그 방법을 제시하고 상호 협의 하여 홍보∙판촉 방법을 달리 할 수 있다.
3. **전항의 홍보∙판촉물 제작에 있어 “을”이 직접 하는 경우 “을”은 “갑”의 영업표지 사용에 대한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2조 (초도 물품의 주문)**

1. “을”은 가맹점의 개점과 고객들의 수요 충족을 위하여 가맹점 크기별 초도 물품을 개점 전까지 “갑”과 협의하여 “갑”에게 주문 하여야 한다. 다만, 초도물품 중 권장거래처품목의 경우 “갑”에게 주문하거나 직접 구입할 수 있다.
2. 전항 단서에 따라 권장거래처품목을 “을”은 자신이 직접 구입하는 경우 개점 2일 전까지 자신의 가맹점에 구비 완료하여야 한다.
3. 가맹점 개점 전 초도 물품의 납품가격은 “을”의 가맹점에 공급 당시 납품가격 또는 개점 전 “갑”이 제시한 금액으로 결정되며 시장상황 또는 “갑”의 사정에 따라 가격이 변동 될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사전 통보하고 변동된 납품가격에 공급한다.

**제13조 (인 ∙ 허가 및 초기 투자금의 납입)**

1. 가맹점설비 관련 또는 “본 계약”에 따른 가맹점 운영을 위한 사업자등록증을 비롯한 각종 담배, 주류 등의 제반 인∙ 허가는 영업개시일 전까지 "을"의 책임과 비용으로 취득하거나 필요에 따라 갱신한 후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제 1항을 해태 하여 발생되는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은 “을”에게 있다.
3. “을”은 제8조 내지 제12조의 이행을 위해 “갑”에게 지급할 금액에 대하여 별첨3의 대금 지급방법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다.

**제 14조 (개점 점검 및 승인)**

1. “을”은 개점일 전일까지 “갑”에게 구입 및 설치를 의뢰한 가맹점의 설비, 장비, 초도 물품 등에 대하여 점검을 완료하여 “갑”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2. “을”은 개점 전일까지 “갑” 또는 “협력업체”에게 지급할 금전의 입금을 완료하고 그 사실을 “갑”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을”의 통지 태만으로 인하여 개점이 지연될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을”이 전적으로 모든 책임을 진다.
3. “을”은 개점에 앞서 직접 실시한 가맹점의 설비와 장비 및 초도물품 등의 구입 등에 관하여 “갑”이 정한 기준과 사양을 준수 하였는지 와 시설공사의 완전성과 가맹사업의 이미지 통일성을 준수하였는지에 대하여 “갑”으로부터 개점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갑”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개점 승인을 거부하거나 보류 헐 수 있다.
5. “을”의 가맹점에 적정 매장근무자가 채용되지 않아 정상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6. “을”이 제8조 내지 제13조의 이행을 완전하게 완료하지 못한 경우
7. “을”이 “갑” 또는 “협력업체”에게 지급할 금전의 입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8. 그 밖의 “을”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개점이 연기 되는 경우
9. “갑”은 “을”에게 전항 제 1호 내지 제 4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지급할 개점승인을 한다.

**제3장 개점 이후 “갑” 과 “을”의 권리와 의무**

**제15조 (전산관리비 및 공급품 대금의 납입)**

1. “을”은 베스트올 편의점 운영에 필요한 POS시스템 사용을 위한 전산관리비로 정보공개서의 기준에 따라 “갑”이 지정한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2. “을”은 “갑” 또는 “협력업체”로부터 공급 받는 공급품에 대한 대금을 물품 입고 시 그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즉시 배송기사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당일 온라인 결제하기로 한다. 이때 공급품 대금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갑”은 공급품의 공급을 중단 할 수 있다.

**제16조 (개점 이후 교육 및 훈련)**

1. 개점 이후 교육의 종류는 수시교육, 특별교육, 재교육으로 구분한다.
2. 수시교육은 “갑”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여 사업을 운영하는데 있어 가맹점에 반드시 통지하여야 할 사항 및 꼭 필요한 의견수렴이 있을 경우 실시한다.
3. “을”은 수시 교육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필수적으로 참석하여야 하며 수시교육에 대한 기본 이론 교육비는 무료이다. 다만, 실기 교육 및 특수사항(전문 강사 초빙, 워크샾)이 있을 시에는 비용이 별도로 추가 될 수 있다.
4. “을”은 자신의 비용 부담으로 “갑“에게 특별교육 및 훈련 요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5. “갑”은 가맹점 개설 후에도 “을”의 가맹점관리 및 근무자들의 교육상태가 미흡하여 가맹점으로서의 자격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시에는 재교육을 지시할 수 있으며 이는 가맹점방문기록에 기준하여 적용한다. 이때 “을”은 자신의 비용 부담으로 재교육을 받아야 하며 그 비용은 “갑”과 협의하여 결정 한다.
6. 교육장은 “갑”의 직영점 또는 “갑”이 지정하는 교육공간에서 교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7조 (비밀유지 의무)**

1. “갑”은 “을”에게 영업에 필요한 각종 정보 및 자료들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을”은 “갑”이 제공한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이나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어떠한 목적으로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을”은 가족 및 그 직원에 의한 전항의 의무위반에 대하여도 관리감독상의 책임을 부담 한다.
3. 본 조 제2항의 의무는 “본 계약”의 성립시점부터 종료한 후 3년이 경과되는 날까지 지속된다.

**제18조 (경업금지 의무)**

“을”은 “본 계약”의 존속기간 중에 “갑”의 허락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명의로 “갑”의 영업과 정보공개서 상의 동종 사업(타사 가맹점 및 독립점포 경영을 포함한다)을 경영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계약 존속 기간 및 계약 종료 이후에도 동일∙유사한 상호∙브랜드 명 등을 사용해 “갑”의 영업표지를 침해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 (경영지도)**

1. “갑”은 “을”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슈퍼바이저, 지역관리자(가맹지역본부), 배송담당자 등을 파견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가맹점의 경영지도를 할 수 있다.
2. 계약이행(Contract):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통한 브랜드 명성 유지 여부 확인
3. 표준화(standardization): 고객에게 제공되는 표준화된 서비스의 유지 및 각 제품의 특성을 극대화하는 방법 등에 대한 해설 및 지도
4. 시장조사(Market Research): 가맹점의 특성 및 시장변화 분석 방법에 대한 지도
5. 판촉(Sales promotion): 신규 고객 창출 및 제품의 판매 촉진활동 지도
6. 가맹점의 경영상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분석 및 지도
7. “을”은 “갑”의 효과적인 경영지도를 위하여 “갑”이 요청하는 자료를 지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8. “을”은 “갑”이 제공하는 제1항 각호에 의한 경영상의 정당한 규제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9. “을”은 자신의 비용 부담으로 “갑”에게 특별 경영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10. “을”로부터 특별 경영지도 요청을 받은 "갑"은 경영지도계획서를 “을”에게 제시할 수 있다.
11. “갑”은 경영지도 결과 및 개선방안을 “을”에게 서면으로 제시할 수 있다.

**제20조 (감독 및 시정 요구권 등)**

1. “갑”은 “을”의 가맹점 경영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매뉴얼 등에서 제시한 관리기준에 의하여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갑”의 직원을 통하여 “갑”이 정한 규정 이외의 제품 취급 여부, 제품의 보관상태(비품 등 보관 상태 등), 위생상태, 매장 운영 전반에 대하여 점검 및 지도·관리·감독하고 그 결과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2. 전항에 따른 점검에 대하여 “을”의 요청이 있을 시 쌍방 합의 하에 그 방문횟수를 조절 할 수 있으며 가맹점 방문 점검 결과는 “갑”의 직원과 “을” 또는 “을” 매장의 관리자(아르바이트 및 직원)를 통하여 가맹점 방문기록표에 서명 기록한 후 “갑”이 보관한다.
3. “을”은 “갑”이 필요 시 소집하는 정기 또는 부정기적인 가맹점사업자 회의에 필히 참석하여야 한다.
4. “을”은 가맹점운영에 관하여 건실한 자금관리 관행을 가져야 하며 “갑”이 요구할 시 판매실적 등을 “갑”이 요구하는 양식에 의거·작성하여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을”은 “갑” 또는 “갑”이 지정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점검이나 기타 가맹점의 재고∙유지관리 상태를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영업시간 중 언제든지 자신의 가맹점에 출입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21조 (영업의 표준화 및 취급품목, 판매가격)**

1. “을”은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표준화를 위해 “갑”이 제시하는 가맹점 운영지침 및 매뉴얼 등을 준수해야 하며, “갑”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2. “을”은 반드시 “갑”이 제시하는 물품 또는 서비스의 적절한 품질기준을 준수 하여야 하며,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해치지 않는 “갑”으로부터 승인 받은 제품만을 고객에게 판매·제공 한다. 아울러 “을”은 취급하는 제품이나 영업활동을 변경하는 경우 반드시 “갑”과 협의 하여야 한다.
3. **“을”은 가맹사업의 브랜드 통일성 및 제품관리를 위하여 “갑” 또는 “협력업체”를 통하여 판매할 제품을 매입하여야 한다.**
4. **“을”이 전항에서 지정한 거래선 이외의 자로부터 제품을 매입하거나 “갑”이 추천하는 상품 이외의 제품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베스트올 이미지의 손상 예방을 위하여 “을”은 “갑”으로부터 사전에 검토를 받고 문서로써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갑”은 시장상황이나 소비자의 동향 또는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을”에게 가장 적절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소비자 판매가를 정하여 권장할 수 있다. 다만, “을”이 위 가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갑”이 정한 소정양식에 의하여 “갑”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고 “갑”과 사전 협의 하여야 한다.**
6. “갑”은 “을”에게 기존에 지정한 상품 및 용역 이외에도 가맹사업의 개선, 고객니즈의 변화, 경쟁업체의 출현, 시장상황,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가맹사업 전체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으로 기존 상품 및 용역의 변경 또는 추가를 요구할 수 있다.

**제22조 (공급품 등의 조달과 관리)**

1. “갑”은 자신 또는 “협력업체”를 지정하여 베스트올 브랜드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의 공급품을 “을”에게 공급한다. 다만, “갑”의 경영방침에 따라 공급품의 종류 및 “협력 업체”를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2. “을”이 가맹점에서 판매되는 주류를 제외한 제품
3. “갑”의 영업표지가 인쇄된 소모품과 비품
4. 기타 “을”이 “갑”에게 구입을 의뢰한 공급품
5. “을”은 전항 각호의 공급품에 대하여 “갑”이 지정한 방법에 따라 주문할 수 있다.
6. “갑”은 “을”이 주문한 전항 각호의 공급품에 대하여 “갑” 또는 “협력업체”의 배송일정에 따라 공급품을 공급하거나 공급 지시를 하기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을”의 주문 오류에 의한 경우
8. “갑”이 보유하지 못한 상품의 경우
9. 외상 매출금 미결제로 인한 배송 중단 및 결제 후 배송일 이외의 일자에 배송을 요청하는 경우
10.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공급품 공급이 지연 되는 경우
11. 국제간 마찰로 인하여 공급품 수입이 지연 되는 경우
12. 통상적인 공급량을 초과한 수요로 인한 절품의 경우
13. “갑”과 “을”이 협의한 경우
14. 기타 거래관행상 인정되는 정상적인 물품공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사유 또는 “갑”의 귀책사유로 돌릴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
15. 전항의 배송일정과 관련하여 “을”이 주문한 공급품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배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갑” 또는 “협력업체”는 배송일이 법정 휴일인 경우 그 휴일의 익일 배송하거나 “을”과 협의하여 배송일을 조정할 수 있다.
	* + 1. 냉동식품- 배송일 오전 9:30 이전 발주 공급품에 대하여 당일 배송
			2. 기타 물품- 배송일 전일 오후 3시 이전 발주 공급품에 대하여 익일 배송(지역에 따라 주3회 배송일정)
16. “갑” 또는 “협력업체”의 배송 시 “을”의 수령지체(매장 부재 시 등)가 있는 경우 “갑” 또는 “협력업체”는 무 검수 입고 할 수 있다. 다만, “을”은 입고한 물량에 대하여 하자가 있는 경우 24시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17. 전항과 관련하여 공급한 물량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갑” 또는 “을”은 전수 검수를 실시할 수 있다.
18. “을”은 “갑” 또는 “협력업체”에게 공급 받은 공급품의 품질을 인수, 보관, 판매 시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고, 취급 제품 중 유효기간 경과 및 변질품은 즉시 폐기해야 하며, 제품 관리 태만으로 인한 관계 법령 저촉 시 그 책임은 전적으로 “을”이 진다.
19. “을”은 관련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설비와 장비를 갖추어 공급품의 성질에 적합한 방법으로 공급품을 보관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20. “을”은 “갑” 또는 “협력업체”로부터 공급 받은 공급품을 고객판매 용도 외 타 베스트올 가맹점에 공급하거나 “갑” 과 경쟁관계에 있는 자에게 공급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1. “갑” 또는 “협력업체”가 공급하는 공급품의 공급가격은 “갑” 또는 “협력업체”가 정하며, 시장상황 또는 “갑” 또는 “협력업체”의 사정에 따라 공급가격은 유동적일 수 있다.
22. “갑”은 무반품 상품을 제외하고 “을”로부터 반환 받은 재고 상품에 대하여 정상품의 경우에는 “을”이 당해 상품을 “갑”으로부터 공급받은 가격으로, 그리고 규격∙품질∙성능∙포장이 훼손된 재고 상품에 대해서는 훼손 정도에 상응하는 금액을 감하여 “갑”의 채권에서 변재 충당한다.
23. “을”이 “갑”으로부터 공급 받은 공급품은 “을”이 공급품 대금을 “갑”에게 지급하기 이전 까지는 “갑”의 소유이며 “을”은 대금지급을 완료하지 못한 공급품에 대하여 주의하여 보관, 관리 하여야 하며, “을”의 보관, 관리 중에 발생한 공급품의 멸실, 훼손, 분실, 도난, 화재 또는 기타 모든 위험과 책임은 “을”이 부담한다.

**제23조 (자점매입)**

1. “을”은 제2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품목에 대하여 베스트올 브랜드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갑” 또는 “협력업체”로부터 공급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 “을”은 “갑”으로부터 승인받은 품목에 한하여 직접 구매할 수 있다.
2. “갑”이 지정한 제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필요한 품목 중 “갑” 또는 “협력업체”가 공급하지 않는 품목의 경우
3. “을”이 제2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공급품에 대하여 “갑”으로부터 자점매입 승인을 얻은 경우
4. “갑” 또는 “협력업체”의 귀책사유로 제2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공급품 공급을 5일 이상 지체하는 경우
5. 제1항 각호의 경우에도 “갑”이 제시하는 공급품 품질기준에 부합해야만 한다.
6. “을”이 제1항의 단서에 의하여 직접 구매하는 공급품에 대해서 “갑”은 언제든지 그 품질을 검사할 수 있으며 “을”은 “갑”의 품질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4조 (공급품의 하자∙검사와 반품)**

1. “을”은 공급품을 공급 받는 즉시 수량 및 품질을 검사한 후 하자 유무를 서면 또는 구두로 “갑” 또는 “협력업체”(인테리어, 물류)에 통지하여야 한다.
2. “갑”이 공급한 공급품의 성질상 수령 즉시 하자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6개월 이내에 이를 발견하여 “갑”에게 통지하고 정상적인 물품으로 보수 또는 교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공급품은 원형으로 파손, 변질이 없이 보존 되어야 하며 변질되기 쉬운 물품의 경우 인도 즉시(무 검수 입고 시 24시간 이내) 반품 또는 교환을 요청하여야 한다.
3. “갑”은 “협력업체”에서 하자를 알면서 시공을 하였거나, 물품을 공급한 경우 “협력업체”가 원활한 하자 보수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4. "을"이 검사를 태만히 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품/교환/수량 보충/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단, "갑"이 하자가 있음을 알면서 공급한 경우에는 "을"은 제 2항의 기간과 상관없이 "갑"에게 반품/교환/수량 보충/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5. “갑”은 또는 “협력업체”가 공급한 공급품/자재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공급한 자가 책임을 진다. 그러나 “갑” 또는 “협력업체”가 공급하지 않은 공급품/자재 또는 “을”이 보관상의 잘못 및 관리 소홀로 발생한 손해는 “을”의 책임으로 한다(“갑”이 “을”에게 인계한 후 공급품이 변질한 경우 등).

**제25조 (가맹점운영권의 제한)**

1. “갑”은 “을”에게 다음 각호 1의 사유가 있는 경우 서면으로 예고한 후 “을”에 대한 “갑” 또는 “협력업체”의 공급품의 공급을 중단하는 등의 가맹점운영권을 제한 할 수 있다. 이 경우 “갑”은 재 공급 등의 제한해제 조건을 지체 없이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제3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제4조 제3항에서 허용한 영업표지의 사용범위 외에 “갑”의 서면 동의 없이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경우
4. 제4조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업표지를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양도한 경우
5. 제15조 및 기타 대금의 약정한 납입 기일을 경과하는 경우
6. 제16조 규정에 의한 수시교육 및 재교육의 이행을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거부할 경우
7. 제17조 제 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갑”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
8. 제1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경업행위를 하는 경우
9. 제20조 제1항에 의한 “갑”의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10. 제21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품 임의 변경, 필수품목 미사용, 지정거래처 임의변경 등 가맹사업의 통일성 유지를 저해할 경우
11. 제21조 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갑”의 사전 동의 없이 가격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12. 제22조 제9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13. 제23조 규정을 위반하여 자점매입을 하거나 품질검사를 2회 이상 응하지 않는 경우
14. 제26조 복장 규정 및 영업시간 규정을 위반한 경우
15.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후화 또는 위생·안전의 결함으로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시설 등의 교체·설치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16.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자료 통지 및 제공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17. 제29조 규정의 광고비 분담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18. 제30조 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판촉활동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경우
19. 제30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 승인 없이 판촉활동을 하거나 팜플렛, 리플렛, 카다로그, 쿠폰 등을 제작하여 베스트올 브랜드 통일성 및 이미지를 훼손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20. “을”이 “갑”의 사전 승인 없이 제35조 제1항의 “양도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21. 기타 “본 계약”의 내용 및 별도 약정한 계약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제26조 (복장 및 영업시간)**

1. “을”의 매장에서 근무하는 자(이하 “매장근무자”라 한다)는 "갑"이 지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2. “갑”은 “매장근무자”의 복장의 색깔, 규격을 매뉴얼 등을 통하여 통지한다.
3. “을” 및 “매장근무자”가 규정된 복장을 착용하지 않는 경우, 가맹점 내에서 근무할 수 없으며 “갑”은 “을”에게 이를 시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4. “을”은 자신의 가맹점 운영에 대하여 연중무휴를 24시간 영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갑”과 협의 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일시적으로 휴업을 하려는 경우 “갑”에게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오전 1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매출이 영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저조하여 6개월간 영업손실이 발생하거나, 질병의 발생과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영업시간 단축을 요청할 수 있다.

**제27조 (시설 및 기기의 유지 관리)**

1. “을”은 청결한 가맹점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2. “을”은 전항의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갑”과 사전협의를 거쳐 점포의 시설 등이 노후화된 경우 또는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해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시설을 새롭게 교체하거나 신규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전항에 따라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함에 있어 “갑”은 필요한 경우 점포환경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이때 “을”은 리모델링 일 기준 등록된 정보공개서 제시된 기준에 따라 점포환경 개선 비용 중 일부를 “갑”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을”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갑”이 비용을 분담하지 아니한다.
4. 전항에 따라 “을”이 “갑”에게 점포환경 개선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을”은 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갑”은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갑”과 “을”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지급이 가능하다.
5.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갑”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갑”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하다.
6. “을”은 별첨1의 소재지 상의 가맹점 내의 가맹점의 설비를 “갑”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8조 (회계자료 및 통지의무)**

1. “을”은 가맹점 영업과 관련하여 영업장부, POS, ERP시스템, 회계장부(이하 ‘회계자료’라 한다)를 성실히 작성·유지하여야 하며, “갑”이 지정한 POS시스템을 설치하고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을”은 공급품의 구입과 판매에 관한 회계자료 등 “갑”의 통일적 사업경영 및 판매 전략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유지와 제공을 하여야 한다.
3. “을”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갑”의 정보공개서 작성을 위하여 연 매출액에 대하여 “갑”의 요청이 있을 경우 성실히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4. “을”은 본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확인과 기록을 위한 “갑”의 전산 매출정보 수집, “갑”의 직원이 출입, 조사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한다.
5. “을”은 사업장소, 대표자 및 가맹점관리자 인적 사항 등 사업자 등록상 또는 영업상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6. “을”은 “갑”으로부터 사용허락을 받은 영업표지 및 지식재산권의 권리에 대한 침해를 이유로 제3자가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9조 (광고)**

1. “갑”은 가맹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베스트올의 공동광고(브랜드광고, 제품광고 등을 포함하며 가맹점 모집광고는 제외 됨)를 총괄하며 “갑”의 경영적 판단과 결정에 의하여 광고에 사용되는 소재와 매체, 횟수, 시행일자 및 기간 등의 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
2. 전항에 따라 시행되는 광고활동은 “갑”의 경영방침에 따라 그 대금의 일부(가맹본부 50%, 가맹점사업자 측 50% 분담(가맹점 모집광고는 “갑”이 전액 부담) 원칙이며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가 “을”에게 청구 될 수 있다. 이때 “을”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갑”이 시행하는 공동광고 활동에 반드시 참여하여야 한다.
3. “갑”은 “을”에게 공동 광고비 분담을 요청하는 경우 광고 실시 최소 1개월 이전에 그 광고의 성격과 전체 비용 및 각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광고비를 통지한다. “을”은 이때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이를 납입하여야 한다.

**제30조 (판촉)**

1. 판촉 활동은 각 가맹점 별로 개별 판촉활동과 전국 또는 지역단위 가맹점 및 직영점에 공통으로 적용되어 시행되는 공동 판촉활동으로 구분된다.
2. 개별 판촉활동은 “을”이 가맹점 오픈 후 단독으로 시행하는 판촉활동으로서 “을”은 매장의 영업활성화를 위하여 개점 이후 “갑”의 지도와 통제에 최대한 협조하여 판촉활동을 진행하여야 한다.
3. 공동 판촉활동은 “갑”이 가맹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국규모 및 지역단위의 할인판매, 경품제공, 이벤트 등과 같은 판촉활동을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갑”이 기획 비용을 부담하고 “을”이 자신의 가맹점에서 소요되는 판촉물의 제작 비용 및 직접 판매하는 판매제품의 할인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단, 그 밖의 비용 분담은 “갑”과 “을”이 협의 하여 결정한다.
4. “갑”은 판촉활동의 횟수, 시기, 방법, 내용 등을 가맹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필요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다.
5. “을”은 “갑”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갑”이 계획, 주관하는 “갑”이 배포한 공급품 교환권과 무료이용권 및 할인권 등(이하 “쿠폰”이라 한다)에 대한 판매, 사용 등의 공동판촉활동에 참여 하여야 한다. 다만, “을”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그 내용을 사전에 “갑”에게 서면 신청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전항의 경우 “갑”이 발행하는 쿠폰은 그 유효기간을 명시하여야 하고 “을”이 회수한 쿠폰에 대한 보상은 “갑”과 “을”이 사전에 협의한 바에 의하여 정당하게 시행한다.
7. “을”은 가맹점 영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기의 비용으로 자기의 영업지역 내에서 판촉활동 등을 할 수 있다. 단, 판촉활동 등을 위한 팜플렛, 리플렛, 카다로그, 쿠폰 등의 내용은 베스트올 브랜드의 통일성 및 이미지 유지를 위하여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제작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제4장 계약의 해지 및 종료**

**제31조 (계약의 해지)**

1. “갑”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의 위반사실을 명시하여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하는 문서를 “을”에게 2회 이상 통지하고 2개월이 지나도 시정되지 않으면 “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2. “을”이 제25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더 이상 가맹점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3. “을”의 귀책사유로 제8조 내지 제13조의 이행을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3개월 이상 지연되거나 이에 따른 금전 채무지급을 “을”이 지체하는 경우
4. “을”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위반사실을 명시하여 시정하도록 요구하는 문서를 “갑”에게 통지하고 1개월이 지나도 시정되지 않으면 “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5. “갑”이 제6조에서 부여한 영업지역에 부당하게 직영점 또는 가맹점을 설치하는 경우
6. “갑”이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공급품에 대하여 부당하게 공급을 거절하는 경우
7. “갑”이 가맹사업의 성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을 경우
8. “갑” 또는 “을”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최고 없이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9. “갑” 또는 “을”에게 파산∙ 화의 등의 신청이 있거나 회사정리절차 및 강제집행절차가 개시된 경우
10. “갑” 또는 “을”이 발행한 어음, 수표가 부도 처리되거나 강제집행을 당하는 경우
11. 천재지변 등으로 “갑” 또는 “을”이 더 이상 가맹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된 경우
12. “갑”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고 없이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3. “을”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14. “을”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갑”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한 경우
15. “을”이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위반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음으로써 당사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한 경우
16. 그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17. 그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의 부과 처분
18. 그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19. “을”이 당사의 영업비밀 또는 중요정보를 유출한 경우
20. “을”이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이를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과징금·과태료 등의 부과처분을 포함한다)을 통보받고도 행정청이 정한 시정기한(시정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내에 시정하지 않는 경우
21. “을”이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query=%EA%B0%80%EB%A7%B9%EC%82%AC%EC%97%85&x=0&y=0#AJAX)(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query=%EA%B0%80%EB%A7%B9%EC%82%AC%EC%97%85&x=0&y=0#AJAX)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22. “을”이 본 조 제1항 각호의 위반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갑”이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가맹사업[법 제14조제1항](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query=%EA%B0%80%EB%A7%B9%EC%82%AC%EC%97%85&x=0&y=0" \l "AJAX" \o "팝업으로 이동)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23. “을”이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24. “을”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는 경우
25. “을”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26. 제 1항 내지 제3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을”의 사정에 의하여 “을”이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을”은 2개월 전에 “갑”에게 계약 해지의 내용을 통보하고 “갑”이 제시하는 합의 해지서를 작성하면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27. “갑”이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 “갑”은 이를 미리 “을”에게 알리고 협의 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때 “갑”이 “을”로부터 수령한 가맹금 중 이행 의무가 남아 있는 부분이 있을 경우 “을”은 계약 해지와 함께 “갑”의 귀책 정도에 따라 가맹금 중 미 이행 부분 중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청구 할 수 있다.

**제32조 (계약의 종료와 그 조치)**

“본 계약”이 해지 또는 기간만료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 가맹점운영권이 만료된 것으로 보며 후속조치는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1. “을”은 “갑”에게 사용 허가를 받은 영업표지가 인쇄된 간판 및 기타 표시물을 즉시 철거 하여야 한다. 이때 철거 비용은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가 “갑”의 귀책사유로 인해 종료되는 경우 외에는 “을”이 부담한다.
2. “을”은 “갑”으로부터 사용 허가를 얻어 사용하던 상호, 간판, 기타 표시물 등을 변형하여 “갑”이 소유하고 있는 상표권의 권리범위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을”은 “협력업체”로부터 지원 받은 기기 등을 임의 철거를 하지 못하며 지원 받은 품목을 반환해야 한다.
4. 이 경우 계약 종결을 이유로 “갑”이 이미 제공한 공급품을 “갑”에게 반환 청구할 수 없다. 단, 상호 협의하여 반환품목을 결정할 수 있다.
5. “을”은 가맹점운영에 관한 모든 관계서류(계약서, 매뉴얼 등)를 반환 하거나 즉시 폐기하여야 한다.
6. “을”은 계약 유효기간 동안이나 혹은 종결 후에도 경쟁 관계에 있는 자에게 영업내용이나 고객을 넘겨주는 행위 또는 “갑”에 대한 신용을 해치거나 비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3조 (위약벌 등)**

1. “을”이 계약 기간 내 또는 계약 종료 이후 2년 이내 제17조(비밀유지 의무), 제18조(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을”은 “갑”에게 위약벌로 금 원(\ ) 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을”이 지정거래처품목에 대하여 “갑” 또는 “협력업체”를 통해 구입하여 사용하지 않고 “갑”의 사전 동의 없이 별도의 거래처를 통하여 지정거래처품목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경우 “을”은 “갑”에게 위약벌로 금 원(\ )을 지급하여야 하며, 시정 전까지 적발 익일부터 위약금으로 하루 당 금 원(\ )씩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3. “을”이 “갑”의 사전 동의 없이 지정사양(제조원/판매원 등)의 필수품목 이외에 품목을 구입/사용하거나 지정된 제품 이외의 제품을 판매할 경우 적발 즉시 위약벌로 금 원(\ )을 지급하여야 하며, 시정 전까지 적발 익일부터 위약금으로 하루 당 금 원(\ )씩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4. “을”이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후 “갑”이 계약 기간 내에 사용을 허락한 영업표지 등을 상호, 간판, 기타 표시물 등에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을”은 계약 종료일로부터 1일 금 원(\ )씩 상표권 침해에 대한 위약벌로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5. 제1항 내지 제4항의 위약벌 규정에도 불구하고 “갑” 또는 “을”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를 입은 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34조 (중도 계약 해지에 따른 금전 반환 조건)**

1. 가맹점 오픈 후 최초 계약기간 내에 해지된 경우 “갑”은 “을”로부터 지급 받은 가맹금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반환 여부가 결정된다.
	1. 가맹비는 “을”이 베스트올 가맹사업에 가맹점으로 참여하기 위하여 최초 발생하는 소멸성 비용으로서 가맹사업 개시 후에는 반환되지 않는다. 다만, “갑”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2. “갑”이 가맹사업법상 가맹금반환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을”이 가맹금반환 청구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가맹금 반환 청구를 하는 경우 가맹금 중 일부가 반환될 수 있다.
2. 반환되는 금전이 있을 경우 그 범위에 대하여는 가맹계약의 체결경위, 지급된 금전의 성격, 가맹계약기간, 계약이행기간, 가맹사업당사자의 귀책 정도 등을 고려하여 그 반환 범위가 변경 될 수 있다.

**제35조 (영업의 양도 등)**

1. “을”은 “을”의 개인적 적성과 경영마인드 및 자금동원능력이 반영되어 “본 계약”상 그 지위가 결정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제3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양도, 전대, 사업자명의 변경, 위탁 경영하는 경우 등(이하 “양도 등”이라 한다)에는 사전에 “갑”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을”은 전항의 승인을 “양도 등”에 앞서 “갑”에게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갑”은 동일한 조건으로 자신에게 먼저 양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3. “갑”은 전항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승인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갑”은 “을”과 그 대상자가 본 조에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한 승인을 거절할 수 없으며,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갑”이 전항에 따라 승인을 한 경우 대상자는 승낙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갑” 및 “을”과 양수계약 또는 별도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때, “을”은 잔여기간에 대한 가맹점운영권을 포기하기로 한다. 다만, 자신의 점포의 권리에 대해서는 별도로 양수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만일 이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갑”은 전항의 승인을 철회할 수 있다.
5. 전항에 따른 승인을 득한 경우 “을”의 양수인은 잔여계약 기간에 대하여 가맹점운영권이 인정되며, 양수에 따른 교육이수 및 정보공개서상의 양수인의 부담비용(정보공개서상의 양수 가맹비 등)을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양수인이 원할 경우 신규가입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6. 제3자에게 양도를 한 양도인 “을”은 제6조의 영업지역 내에서 상법의 규정에 따라 자신 또는 제3자의 이름으로 베스트올과 동종 업종의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7. “갑”의 사전승인 없이 이루어진 “양도 등”은 “갑”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며 “갑”은 “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8. “갑”이 베스트올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을”은 양수한 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을”은 새로운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으면 기존 가맹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이때 “갑”이 “을”로부터 수령한 가맹금 중 이행 의무가 남아 있는 부분이 있을 경우 “을”은 계약 해지와 함께 “갑”의 귀책 정도에 따라 가맹금 중 미 이행 부분 중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청구 할 수 있다.

**제36조 (영업의 승계)**

계약기간 중 “갑”으로부터 아래의 사항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전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 계약”에 따른 영업을 승계한 것으로 본다

* + - 1. 직계 존비속에게 영업을 승계하는 경우
			2. 점포를 다른 장소로 이전하여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
			3. 동업자간 대표자 명의가 변경된 경우

**제5장 기타**

**제37조 (지연이자)**

1. “본 계약”에 규정된 금전지급의무 또는 “본 계약”의 위반으로 부담하는 금전지급의무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지급기일을 경과하면 미지급액에 대하여 지급기일의 다음날로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연 이율 20%의 지연이자를 가산한다.
2. “을”이 미 지급한 채무액은 이자, 원본의 순서로 충당하고, 먼저 발생한 채무부터 우선 충당한다.

**제38조 (통지방법)**

1. “본 계약”상 필요한 상대방에 대한 모든 통지는 서면으로 하되, 팩스(FAX), 인편 또는 우편으로, “갑” 또는 “을”의 계약상 주소지로 배달 되어야 한다.
2. 단, 별도의 주소를 상대방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39조 (동의와 권리행사)**

1. “갑” 또는 “을”은 “본 계약”에 의하여, 상대방의 사전 동의를 구하는 경우, 이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2. “갑”은 “을”에게 어떠한 형태로든 “본 계약”에서 정한 외에 다른 대가나 보상을 청구할 권한이 없다.
3. “갑” 또는 “을”이 상대방과 특정한 계약 위반 사실에 대한 손해 배상에 관한 합의를 한 경우, 그 합의의 효과는 당해 사실에 국한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로써 이전에 발생한 손해 배상 청구권이 소멸 되지 않는다.

**제40조 (계약의 효력 및 변경)**

1. “본 계약”은 “갑”과 “을” 사이에서 논의된 모든 사항을 규정한 최종 계약이다. 따라서 양당사자는 “본 계약”이 체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교환된 일체의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상담, 권고, 협의 등을 이유로 “본 계약”과 다른 주장을 할 수 없다.
2. “본 계약”은 상호 서면에 의한 합의가 없으면 변경되지 아니한다.

**제41조 (분쟁해결 및 관할법원)**

1. “갑”과 “을”간에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갑”(“갑”의 임직원 포함)과 “을” 양당사자가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분쟁해결 노력을 한다.
2. 양 당사자의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 가맹거래사 또는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조정을 받을 수 있다.
3.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의 관할은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갑”과 “을”이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다.
4.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제42조 (사전 정보제공 및 설명의무)**

1. “갑”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고 충분한 숙고기간을 부여하였으며 정보공개서의 이해를 돕고자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였다. 또한 계약 체결 의사를 밝힌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계약 체결일 전에 가맹계약서를 사전 제공하였다. 다만, 가맹계약서의 경우 인터넷 또는 당사 방문을 통한 열람 시에도 가맹계약서를 제공한 것으로 본다.
2. 전항에 의해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거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였더라도 숙고기간(14일, 가맹거래사 또는 변호사 자문 시 7일)이내에 “갑”이 가맹계약을 요청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가맹금의 지급을 요청하여 가맹금이 지급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가맹금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

**제43조 (특약사항)**

“갑”과 “을’은 “본 계약”에 결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특약하며, 개별조항 중 본 조에서 정한 특약과 배치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특약이 우선하여 “본 계약”에 적용된다.

**1. 계약기간 내 타브랜드 전환 및 개인사정으로 인한 계약종료/해지 시 위약벌금 없음.**

**2. 매장에 자점매입을 할 수 있음.**

**3. 계약 조항에 대한 위약시 위약 벌금 없음.**

**“본 계약”이 적법하게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서명, 날인하여 1부씩 보관한다.**

2016년    월     일

**갑**

대 표 자: 이 철 중 (인)

사업자등록번호: 126-86-34150

상 호: ㈜현대씨에스엔

주 소: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로 111-15, 502호(덕풍동,리치플러스 하남센터)

연 락 처: 070-4287-7001

**을**

성 명: (인)

생 년 월 일:

점 포 명:

주 소:

연 락 처:

**별첨1 가맹점의 표시 및 계약기간**

1. 점 포 소 재 지:
2. 예상점포의규모: ( m2)
3. 상 호: 점
4. 가맹점사업자명:
5. 생 년 월 일:
6. 계 약 기 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별첨2 영업지역 표시도**

**아래의 지도 표기와 같이 영업지역을 확인하고 동의하였습니다.**

**\* “을”의 영업지역은 상기와 같이 설정한다. 다만, 상기 영업지역 표시도에 별도의 영업지역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반경 50m의 범위를 설정한 것으로 적용한다.**

 년 월 일 본인 성명: 인

**별첨 3 투자 내역 및 지불방법**

본인은 (주)현대씨에스엔의 베스트올 가맹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가맹점을 개점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주)현대씨에스엔에 지급하는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아래의 금액은 별첨 1의 예상 점포 크기에 따른 금액으로 점포 크기가 변동 될 경우 그 금액이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  |  |  |  |
| --- | --- | --- | --- | --- |
| **구  분** | **내  역** | **금  액 (원)** | **부가세 (원)** | **비고** |
| **가맹비** | 정보공개서 또는 견적서 참조 | **2,000,000원** | **200,000원** |  |
| **장비** |  **원** |  **원** |   |
| **초도물품비** |  **원** |  **원** |   |
|  |   |  |   |
|   |  |  |  |
| **합계** |  |

본인은 (주)현대씨에스엔과 베스트올 가맹계약을 체결/갱신함에 있어서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다음의 일정에 따라 아래의 계좌로 대금을 지불하기로 합니다. 다만 점포크기 등이 변경되어 금액의 차이가 발생할 경우 잔여분에 대해서는 (주)현대씨에스엔이 즉시 반환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주)현대씨에스엔의 요청에 따라 본인이 추가 입금을 하기로 합니다.

|  |  |  |  |
| --- | --- | --- | --- |
| **구분** | **금액(VAT포함)** | **지급시기** | **비고** |
| **가맹비(예치)** |   | 가맹계약 체결 즉시 |   |
| **잔여 대금** |  |  |  |

|  |  |  |  |
| --- | --- | --- | --- |
| **구분** |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
| **예치계좌** |   |   |   |
| **기타대금 납부계좌** |  |  |  |

 년 월 일 본인 성명: 인

\*귀하가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절차와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  |  |
| --- | --- | --- |
| **항 목** | **내 용** | **비고** |
| **계좌번호를 은행으로부터 부여받는 경우** | ① 가맹계약 체결 및 가맹금예치신청서 작성 → ② 가맹본부가 가맹금예치신청서 은행에 팩스로 발송 → ③ 우리은행에서 가맹점사업자에게 계좌번호를 휴대폰으로 안내 → ④ 전송 받은 계좌번호로 은행 방문이나 인터넷뱅킹을 통해 가맹금예치 |  |
| **매장****방문시** | ① 가맹계약 체결 및 예치신청서 교부 → ② 은행(e-비즈니스사업단)방문 → ③ 가맹금예치신청서 제출 및 가상계좌교부 → ④ 가상계좌에 가맹금 예치 |
| **인터넷뱅킹****이용시** | ① 가맹계약 체결 및 예치신청서 교부 → ② 은행(e-비즈니스사업단)방문 → ③ 가맹금예치신청서 제출 및 가상계좌교부 ④ 인터넷뱅킹([www.wooribank.com](http://www.wooribank.com.))접속 → ⑤ 가상계좌에 가맹금 이체 |

[우리은행 계좌가 없어도 가맹금예치가 가능합니다.]

****

|  |  |  |
| --- | --- | --- |
| **항 목** | **내 용** | **비고** |
| **기업은행 계좌****있는 사업자** | ①가맹계약 체결 및 예치신청서 교부 → ②기업은행방문 → ③ 가맹금예치신청서 제출 및 가맹금 입금 → ④가맹금예치증서 교부받아 보관 |  |
| **기업은행 계좌****없는 사업자** | 기업은행 계좌개설 후 위의 절차 실행 |  |
| **계좌****개설시****필요서류** | **본인이****개설시** | ① 가맹금예치신청서(가맹본부 발행)② 실명확인증표(신분증) |  |
| **대리인****개설시** | ① 가맹금예치신청서(가맹본부 발행)② 실명확인증표(신분증)③ 위임장④ 대리인 실명확인증표(신분증) |

**별첨 4 의뢰서 및 사실확인서**

1. 가맹점의 설비 의뢰

본인은 (주)현대씨에스엔과 체결한 가맹계약서에 의거 본인의 가맹점 내∙외부의 설비(인테리어)를 가맹사업 전체의 통일성과 독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현대씨에스엔이 정한 기준 및 사양에 따라 (주)현대씨에스엔이 “협력업체”가 시공하여 주실 것을 의뢰합니다.

1. 그렇다 □ 2. 그렇지 않다 □

1. 권장거래처품목 구입 의뢰

본인은 (주)현대씨에스엔과 체결한 가맹계약서에 의거 본인의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기타 설비 등의 권장거래처품목의 구입 및 설치를 가맹사업 전체의 통일성과 독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현대씨에스엔이 구입 및 설치해 주실 것을 의뢰합니다.

1. 그렇다 □ 2. 그렇지 않다 □

1. 가맹계약서 수령날짜 및 가맹거래사 자문확인

본인은 가맹본부 (주)현대씨에스엔으로부터 베스트올 가맹계약서를 20 년 월 일, 제공 받았으며 이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검토하였습니다.

1. 그렇다 □ 2. 그렇지 않다 □

본인은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기 위하여 가맹거래사 또는 변호사로부터 자문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1. 그렇다 □ 2. 그렇지 않다 □

상기 내용에 대하여 가맹본부의 직원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해당사항 “□” 내에 “V” 표시를 하였습니다.

 년 월 일 본인 성명: 인